

어린이집 인가에 관한 자료

[illegible]

비고

1.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인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 전체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설종류"란은 보육시설 형태별로 직장, 법인, 가정, 부모협동, 민간 등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소유형태"란은 시설(부동산)의 소유 형태별로 해당 년에 "○" 표시하되, 부부가 공동 소유인 경우에도 공유소유란에 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4. "휴지"란은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휴원 중인 경우만 작성하고, 운영 중인 경우에는 빈칸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